

## [ HS 품목분류표 개정경과 ]

구 분	개정개요	주요 개정품목	6단위 코드의 수
1차 개정 (‘92.1.1)	HS제정 작업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 반영 및 호의 용어를 보완·개정	- 소호의 통합 및 신설 - 호의 용어 등	5,019→5,018
2차 개정 (‘96.1.1)	신상품의 개발과 국제기구에서 요청한 마약원료물질 및 오존층 파괴물질 등을 특정 호(또는 소 호)에 신설	- 영상전화기, 팩시밀리, 휴대용 컴퓨터 등 - 마약원료물질 및 오존층 파괴물질 등	5,018→5,113
3차 개정 (‘02.1.1)	폐기물 및 CITES협약 대상품목을 특정 호(또는 소호)에 신설하였으며, HS의 통일적 적용을 위한 용어정의 등을 마련	- 보증된 참조물질 및 산업 폐기물 등 -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- 소매포장 정의 등	5,113→5,224
4차 개정 (‘07.1.1)	국제기구에서 제시한 통제물질 및 IT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특정상품에 대한 호(또는 소호) 를 신설하였으며 다양한 신상품의 개발로 인하여 종전의 용어정의 및 분류 기준을 보완	- 수은화합물, 농약원료, 청석면 등 유해물질 - 반도체 제조용 기기 - 유무선 통신기기 등 - 신문용지, 합성섬유 및 재생 섬유 등에 대한 용어	5,224→5,052
5차 개정 (‘12.1.1)	FAO(국제 식량 농업기구)의 요청에 따른 농수산물의 분류체계를 재편하는 한편, 신상품 및 국제 무역상 중요한 품목을 반영	- 품목분류표상 제3류 어류의 구분을 위한 학명 적용 - 제1~4부의 분류체계 개정 - 유기화합물 분류체계 개정 - 바이오 디젤(제3826호)에 관한 규정 신설	5,052→5,205
6차 개정 (‘17.1.1)	WSC(세계반도체이사회) 요청에 따라 집적회로의 범위를 확대하고, 어류의 학명을 다양하게 특계하는 한편, 신상품 및 국제 무역상 중요품목의 반영	- 제3류 어류의 증명(학명) 확대 -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련 소호 신설(스톡홀름 컨벤션 요청) - 말라리아 퇴치용 제품 관련 개정 - 복합부품(MCO) IC 개념 신설 및 제8542호 범위확대 -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제87류 각 호의 소호체계	5,205→5,387